



청렴 특(Talk)

간추린 우리공사 청렴 뉴스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위 달성

- ☞ 대상기관 : 606개 기관(중앙기관 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 ☞ 조사기간 : '16. 8월 ~ 11월
- ☞ 조사내용 : 내·외부 청렴도
- ☞ 조사결과 : 31개 지방공사 중 1위 달성

종 합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계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계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지수
8.54	8.71	8.61	9.05	8.12	8.25	8.02

- ☞ 2년연속 청렴도 평가 1위라는 성과는 무엇보다도 임직원 개개인의 청렴의식과 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반부패 시책활동에 전사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이루지 못하였을 것임.
- ☞ 이번 평가결과에 안주함이 없이 반부패 및 청렴도 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한번 돌아보면서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번 평가를 도약의 계기로 삼아 감사실에서는 더욱 노력할 것임

우리 함께 풀어요. 임직원 행동강령퀴즈 실시

- ☞ 청렴과 행동강령 등 우리공사 윤리규범 및 반부패·청렴에 대한 관심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참여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반부패·청렴퀴즈를 실시하여 총 763명이 참여하였으며
- ☞ 정답율 98.95%로 전직원의 청렴에 대한 의식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됨

청탁금지법 특별교육 실시

- ☞ 9.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9월 12일부터 21일(10일간)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음




청렴문화체험 GO!GO!

- ☞ 청렴의 의미와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 9월 23일 장성군 청렴문화센터에서 청렴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사적지 탐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 조선시대 청백리 관련 청렴강의 수강, 청백리 전시실 관람, 청렴문화체험(아곡 박수량 백비, 편백숲 체험) 등 일상에서 벗어나 교육과 힐링을 동시에 즐기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음



청렴스티커 제작

- ☞ 생활 속 청렴문구 노출을 통한 전직원의 청렴생활화를 위해 청렴스티커(청탁은 NO! 청렴은 YES!)를 제작·배포하여 사무실에 비치된 모든 전화기에 청렴스티커를 부착하였음



『청탁은 NO! 청렴은 YES!』 청렴 문구를 통해 각자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부패적결을 위한 마음가짐과 청렴의지를 다져 보다 깨끗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결연한 의지 표현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 ☞ 청렴활동의 자발성 향상 및 청렴도 관심을 위해 시행했던 청렴마일리지제도가 직원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2016년도 실적을 마감하였음
- ☞ 개인평가에서는 최우수 직원 기계환경팀 김대장, 역무운영팀 김지연, 우수직원 종합관제팀 김상우, 역무운영팀 윤승현씨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팀 평가에서는 총무팀이 우수팀으로 선정되었음
- ☞ 내년에는 사회공헌활동분야(기부금, 헌혈증 기부 등)에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도시철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램

해외 청렴사례 소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 북유럽의 청렴국 스웨덴

< 국회의원들의 높은 청렴도 >

-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함

<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감시 공조체제 >

- 언론기관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 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하여 부패문제를 고발
-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 확인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 공표

< 관련 사례 >

-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 라고 답했다" 며,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 이라고 말함

역사 속 청렴인(人)

최부는 조선왕조 초기 전라도 나주에서 태어나 처가 고을인 해남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뛰어난 학자이자, 문과에 급제하여 상당한 지위의 벼슬살이도 했던 관료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24세에 진사과에 급제하고 29세에 문과에 제3인으로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 홍문관 부수찬, 수찬을 지내고 부교리에 올라 제주도 경차관(敬差官)으로 갔다. 제주도에서 아버지 상을 당하여 급히 귀향하다가 풍랑을 만나 중국에까지 표류하여 해적으로 오인받아 억류되고 나중에는 조선의 벼슬아치로 인정되어 중국을 유람하고 돌아와 그 유명한 「표해록(漂海錄)」이라는 저서를 지은 큰 학자였다. 그는 서거정 등과 함께 「동국통감」을 편찬하고 「동국여지승람」도 공편했던 학자였다. 그의 외손자이자 당대의 석학이던 미암 유희춘이 기록한 「금남선생사실기(錦南先生事實記)」에 의하면,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도 예문관 응교, 홍문관 교리, 사간원 사간 등의 벼슬을 지냈으나 연산군의 패정을 통박하고 공경대부들의 비행까지 거침없이 꾸짖었던 이유로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저 함경도의 단천(端川)으로 귀양 가고 유배지에서 갑자사화를 맞아 해배되지 못하고 51세를 일기로 끝내 세상을 떠난 강직하고 청렴한 벼슬아치였었다.

청렴 웹툰



부정청탁 금지법



영제선배님! 나랏일에 고생 많으십니다. 용보신 좀 하시라고 삼백 넣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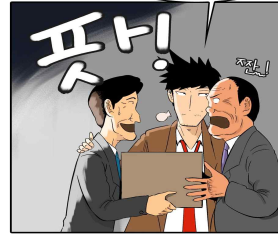
수확이! 공직자는 이런 돈 받으면 안된다. 니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저할 선배님 직무는 관련도 없고, 특별히 부탁하는 일도 없었으니까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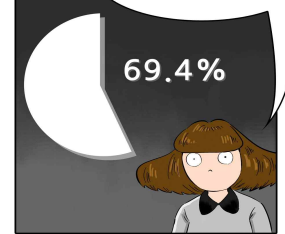


고맙다. 앞으로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내 워든지 도와줄게.

애휴... 공직자분이 이러시면 이제는 끝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가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3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민선의 준비를 다하여



반듯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청탁금지법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새로운
청렴문화가 시작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깨끗한 나라,
신뢰의 대한민국을 위해
만든 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청탁
금지법)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어떤 형태의 금품수수도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차원에서 우리사회가 용인하는 최소한의 금액 등은 허용됩니다.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 ①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② **선물** :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③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5만원

10만원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공공 기관의 장과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무수행 사인(私人)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 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



접대문화 NO,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 Q 공기업 직원이다. 하도급 업체 직원이 가격을 알 수 없는 생일 선물을 전달한다면 금품 수수인가?
 - A 그렇다. 금품이라는 것은 상품권·식사·숙박 제공 등 유·무형 혜택이 다 포함된다. 영수증이 없어 금액 측정이 불가하면 시장에 형성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에 참조한다.
 - Q 공직자등이 사무실 동료직원들이 가액범위(1인당 5만원)이내의 소액의 금액을 각출하여 퇴직동료에게 기념패나 행운의 열쇠 등 선물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A 동료직원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퇴직동료에게 기념패 등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됨, 다만 이 경우 합산금액으로 구입한 기념패나 행운의 열쇠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임
 - Q 뚜레쥬르, 버거킹, 스타벅스 등의 기프트권은 청탁금지법에서 식사에 해당하는지,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A 기프트권은 선물에 해당되어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고·의례를 목적인 경우 가액금액은 5만원임
 - Q 공직자등이 동료직원의 돌잔치에 선물대신 5만원이내의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A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인 직원과 지인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이 가능하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인 동료직원의 돌잔치에는 가액범위 5만원이내의 선물만 가능함(승진, 생일, 돌잔치 등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액범위내의 선물만 가능)
 - Q 직무관련성이 있는 2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돈을 모아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경우
 - A 선물제공자인 2인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공동으로 제공행위를 하였다면 제공받은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제공한 2인도 합산된 금액의 선물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음
 - Q 매일 식사를 같이하는 동료직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매일 1인이 일괄로 식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 A 순번을 정하여 식사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명확히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 더치페이로 식사비용을 지불한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Q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등이 승진 또는 전보인사시 직무관련자로부터 난꽃바구니 등 화훼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A 동료 사이에 선물을 하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인사시 선물수수 가능(5만원초과 허용)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가능
- 직무관련자가 선물을 하는 경우 :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가능(5만원이내 허용)
- 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선물수수금지(5만원 이하금액도 불가)